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79

제출년월일 : 1996. 6. 10.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앞으로 서산시조례규칙심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던 사항중 조례·규칙·훈령등 제정, 개·폐에 관한사항은 서산시조례규칙심의회로 이관하고, 복합민원 종합조정에 관한사항과 불허 민원에 관한사항및 민원업무의 시책등은 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며, 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것을 주1회로 개정함.

2. 주요골자

- 가.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사항중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사항은 신설되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사항은 당해 부서에서 관련절차에 따라 각각 조정하도록 이를 삭제함(안 제3조제4호및제5호).
- 나. 현행 복합민원 조정에 관한사항과 불허민원에 관한사항은 서산시민원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고 이를 삭제함(안 제3조제28호, 제29호).
- 다. 현행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사항중 민원업무의 시책관련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함(안 제3조제35호).
- 라. 현행 회의를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주1회로 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4호·제5호·제28호및 제29호를 삭제하고, 제35호를 제31호로하되, 동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제도개선발전에관한사항

제4조제1항중 "화요일에" 를 "1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p> <p>1.~3.(생략)</p> <p>4. <u>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사항</u></p> <p>5. <u>의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u></p> <p>6.~27.(생략)</p> <p>28. <u>복합민원종합조정에 관한사항</u></p> <p>29. <u>불허민원에 관한사항</u></p> <p>30.~34.(생략)</p> <p>35. <u>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사항</u></p> <p>36.(생략)</p> <p>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u>화요일</u>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⑦(생략)</p>	<p>제3조(조정사항) - - - - -</p> <p>- - - - -</p> <p>1.~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u>(삭제)</u></p> <p>4.~25.(현행 제6내지 제27호와 같음)</p> <p><u>(삭제)</u></p> <p><u>(삭제)</u></p> <p>26.~30.(현행 제30내지 제34호와 같음)</p> <p>31. <u>제도개선 발전에 관한사항</u></p> <p>32.(현행 제36호와 같음)</p> <p>제4조(회의) ①- - - - - 1회 - - - - -</p> <p>- - - - -</p> <p>- - - - -</p> <p>- - - - -</p> <p>②~⑦(현행과 같음)</p>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96. 6. 17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6. 10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1996. 6. 11
- 라. 상정일자 : 1996. 6. 17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담당관 방경태)

가. 제안이유

앞으로 서산시조례.규칙심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 하던 사항중 조례.규칙.훈령등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조례규칙심의회 로 이관하고, 복합민원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과 불허 민원에 관한사항 및 민원 업무의 시책등은 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하며, 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것을 주 1회로 개정함.

나. 주요골자

-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사항중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사항은 신설되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토록하고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당해부서에서 관련절차에따라 각각 조정하도록 이를 삭제함(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 현행 복합민원 조정에 관한사항과 불허민원에 관한사항은 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하고 이를 삭제함(안 제3조제28호, 제29호).

- 현행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중 민원업무의 시책관련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함(안 제3조제35호).
- 현행 회의를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던것을 앞으로는 주1회로 하도록함 (안 제4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1995. 9. 4 내무부령 제659호)의 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규칙 심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그동안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던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정)가 관장하도록 하고,
- 복합민원 조정에 관한 사항과 불허민원에 관한사항,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사항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1995. 3. 5. 조례 제52호)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함과 아울러,
-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토록하고 삭제하며,
-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던 조정위원회를 주1회로 변경하는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었음

5. 토 론

- 없었음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